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2

제출연월일 : 2001.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경기도문화86352-13163(2000. 12. 16)호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설치관련 시·군조례 제정 및 개정이첩 지시에 따라 현행 미술장식심의위원이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정한 심사를 통한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60인이내로 대폭 확대하여 심사위원뱅크제로 운영하도록 하며

○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심사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심의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단서신설).

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10인이내에서 60인이내로 확대하여 심사위원뱅크제로 운영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다. 위원장은 60인의 위원중 10인이내의 위원을 심의 하루전에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4조의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입법)예고 : 2001. 3.14 ~ 3.24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조례개정 지시 공문 : 경기도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로 하고, 동조제4호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제3조중 "미술장식품"을 "미술장식"으로 하고,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수급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미술장식심의제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미술장식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5조의 조명중 "미술장식품"을 "미술장식"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법 제11조 및 영 제25조"를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2.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 : 1000분의 1이상

제6조의 조명중 "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안산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영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의3"으로 하며, "미술장식품"을 "미술장식"으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조명 "구성"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뱅크제로 운영한다.

동조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안산시 기획실장 및"을 "안산시 기획실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으로 한다.

제9조의 조명중 "위원장등의"를 "위원장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10인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일 하루 전에 심의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별지서식)"의 제목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로 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미술장식심의제외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문화체육담당관실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문화체육담당관 윤 학 상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 술 담 당 박 영 옥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종 일 (행정 2068)

〔별지제2호서식〕

미술장식설치심의제외신청서

건축개요	위 치					
	건축주	성 명:		주 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최고높이		구 조	
	용 도		외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 정 일		총공사비	
건 축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전 화	
공 모 및 심사개요	공모일시		공모방법		출 품 수	
	심사일시		심사위원	명	작품선정	점
미 술 품 개 요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대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계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공모요강 1부.
2. 심사결과(심사위원 현황 포함)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도면 1부.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인 경우 총 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이 설치되어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의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3. (생략) 4. 판매시설 5. (생략)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제3조의4····· 1. ~ 3. (현행과 같음) 4. 판매 및 영업시설 5. (현행과 같음)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 할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미술장식····· 별지 제1호서식에 ···· 미술장식 ····· 다만,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수급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미술장식심의 제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미술장식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5조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 비율) 법 제1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제5조 (미술장식의 건축비용 비율)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 1.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2.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 : 1000분의 1이상
제6조 (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안산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의3·····미술장식의·····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기능) 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및 가격의 적정성 2. 작품의 환경과 조화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 ②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안산시 기획실장 및 건축물미술장식품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뱅크제로 운영한다. ②·····안산시 기획실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위원장등의 직무)①(생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신 설>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10인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일 하루전에 심의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별지서식]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서식생략) <신 설>	[별지 제1호서식]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 (서식생략) [별지 제2호서식]미술장식심의제외신청서 (서식생략)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52

제안년월일 : 2001. 4. 14.
제 안 자 : 의회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내용 중 공동주택, 기타 건축을 할 경우 미술장식 설치비용으로 상위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최저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입법취지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술장식 설치비의 부담 비율을 다소 높일 필요성이 있어 건축주에게 과다한 비용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미술장식의 건축비용 비율을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1000분의 1 이상"을 "1000분의 3 이상"으로 하고,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5 이상"에서 "1000분의 6 이상"으로 각각 수정함.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1000분의 5 이상"을 "1000분의 6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1000분의 1 이상"을 "10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미술장식의 건축비용 비율)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5 이상 2.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 1000분의 1 이상	제5조(미술장식의 건축비용 비율)..... .... 1. ....1000분의 6 이상 2. ..... 1000분의 3 이상